

의안번호	2206518
의 퇴 인	남인순의원
회 답 일	2024.12.31.
추계번호	24C6518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의5 (동료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 (제1항) 1. 동료지원인 양성 및 동료간 상담 등 서비스 연계 2.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권익 옹호 사업 3.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연계 4.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심리회복 지원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○ 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인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(제2항)	재량규정
2	안 제34조 (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, 창업지원, 취업알선, 고용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(제1항) 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,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(제2항) 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하여야 함(제3항) 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에게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, 직장체험,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(제4항) ○ 보건복지부장관은 미취업 정신질환자의 직업지도 및 고용촉진을 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이력을 양성하여야 함 (제5항) ○ 기업, 정신건강증진시설·정신건강복지센터, 동료지원센터, 동료지원센터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6항) ○ 그 밖에 고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7항)	의무규정

3	안 제36조 (문화·예술·여가 체육활동 등 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문화·예술·여가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(제2항)	재량규정
4	안 제37조 (지역사회복귀 및 거주를 위한 통합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, 퇴원등이 예상되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·거주와 치료·재활 등이 통합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(제1항)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복귀 또는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임대주택 지원, 자립생활정착금 지원, 임차자금지원, 단기거주 주거지원, 지역사회 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(제2항)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자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복귀 또는 거주할 수 있도록 동료지원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5	안 제37조의 2 (주간활동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주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제1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6	안 제38조 (가족등 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함 (제1항) 1.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2.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3.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4. 가족 자조모임 지원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15조의5 (동료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	—	- 보건복지부는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69조의2¹⁾에 근거하여 동료지원가 상담실 운영 및 양성, 보수 교육사업을 수행 중이며 해당 예산은 2025년 기준 1억 3,400만원임 -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료지원센터의 업무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수행 중이므로 추계에서 제외
2	안 제34조 (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)	—	- 보건복지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4조 및 제35조²⁾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 및 임상실습 등의 사업을 수행 중이며 해당 예산은 2025년 기준 6,200만원임 -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수행 중이므로 추계에서 제외
3	안 제37조 (지역사회복귀 및 거주를 위한 통합지원)	—	- 보건복지부는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4조³⁾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퇴원후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동료지원인의 상담을 제공하는 등 지역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, 거주공간이 부재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총 예산은 2025년 기준 18억9,300만원임 -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복귀 및 거주를 위한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수행 중이므로 추계에서 제외
4	안 제38조 (가족 등 지원)	—	- 보건복지부는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4조에 근거하여 공공후견 서비스 지원 등 정신질환자 및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예산은 2025년 기준 13억 7,600만원임 -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수행 중이므로 추계에서 제외
5	안 제36조 (문화·예술·여가 체육 활동 등 지원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6	안 제37조의 2 (주간활동지원)		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 36조· 제37조의2) 정신질환자에게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 및 주간활동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조문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고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및 계획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및 수준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“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 2022”에 따르면 입원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는 총 11만 6,277명임
 - 2024년 현재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문화·여가·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-
- 1) 제69조의2(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.
 - 2) 제34조(재활상담 등의 조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장애인복지시설기관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1. 국·공립병원, 보건소, 보건지소, 그 밖의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
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·상담·치료·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
 - 제35조(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3)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, 정신질환을 예방·치료하며,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·조사와 지도·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, 사회복지시설,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,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장우윤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4741	jangwy93@assembly.go.kr